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전월세를 지원하고
낯은 집은 고쳐드립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인정액	72	122	158	194	230	266

(단위 : 만원 / 월, 2018년 기준)

지원내용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지원

[임차급여의 지급 기준 : 기준 임대료 (2018년)] (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213,000	187,000	153,000	140,000
2인	245,000	210,000	166,000	152,000
3인	290,000	254,000	198,000	184,000
4인	335,000	297,000	231,000	208,000
5인	346,000	308,000	242,000	218,000
6인	403,000	364,000	276,000	252,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1원 단위 절상)

자가가구

주택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과 지원 주기]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 (주기)	378만원 (3년)	702만원 (5년)	1,026만원 (7년)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3%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 마이홈포털 : www.myhome.go.kr

포털에서 마이홈을 검색하고

Search

주거급여 자가진단하세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